



## 【검토보고서】

2018.11.15.(목)  
제299회임시회

###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유연】



#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자치행정과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일

## 2.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심의·결정사항)제2항에 대한 삭제권고에 따라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대상자 선정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대행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3. 주요내용

- 명예시민 선정 및 취소 시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7조)

##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6조의2
- 예고기간 : 2018. 9. 11. ~ 10. 1.(20일간)

## 5. 검토의견

### 가. 개정개요

-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는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자치조례로 상위법령은 없으며,

- 현재 명예시민 선정과 취소시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이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관련된 개별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심의·결정사항) ②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 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추진위원회·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삭제>

※ 제299회 임시회 안건 상정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주요 내용**

- 명예시민 선정 및 취소 시 대행위원회 정비 (안 제3조 , 안 제7조)

-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예시민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 <b>시정조정위원회</b> ” 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양주시의회(이하 “ <b>시의회</b> ” 라 한다.)에 통보한다.	제3조(명예시민 결정) ① ----- ----- --- <u>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b>공적심사위원회</b>” 라 한다)</u> ----- -----
② 시장은 우호 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양주시(이하 “ <b>시</b> ” 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및 제2조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시정조정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u>공적심사위원회</u> ----- -----
제7조(명예시민 선정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u>시정조정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명예시민 선정취소) ----- ----- <u>공적심사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다. 종합의견

- 명예시민선정과 관련된 사항의 상위법령은 없으며 타시군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음.(참고자료)
- 법제처의 시정조정위원회의 포괄적인 대행규정에 대한 삭제권고에 따라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과 함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 조례에 명시된 명예시민 선정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에 기여한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자는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104명으로 현행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양주시민의 권리를 부여받으며, 시정 주요행사 초청, 연하장 발송 등에 국한된 예우를 받고 있고
- 대부분의 양주시 명예시민은 양주시의 기관장, 학교장 출신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반면 대내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명예시민수여는 드문 실정이기 때문에
- 향후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명예시민에 대한 특전 또는 예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양주시 교류인구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명예시민 선정에 대한 영예 재고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명예시민 선정)**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자.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
4. 지역개발을 위한 직·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5.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및 전출자
6.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
7. 그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의2(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도민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
2. 도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3. 명예도민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강사로 활용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5.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
6. 그 밖에 도정시책·홍보자료 등 제공

**제4조의3(실비지원)**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경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4(입장료 감면 등 지원)** 강원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강원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 경기도 시군별 명예시민 선정방식]

시군	선정방법	비고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	
김포시	공적심사위원회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	
군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	
광명시	시의회	
의정부시	시의회	
구리시	시의회	
시흥시	시의회	
여주시	시의회	
화성시	시의회	
안성시	시의회	
양평군	군의회	
이천시	별도규정없음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가평군	인사위원회	